

의안번호	제 46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11월 17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6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11월 17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자율신설기구(과학인재국) 존속기한 연장
- 2023년 12월 31일까지 → 2024년 12월 31일까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	충청북도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
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 과학인재국의 존속기한은 <u>2023</u> <u>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제3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 ----- <u>2024</u> <u>년 12월 31일</u> -----.

관련 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25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) ① 시·도는 별표 1에 따른 시·도의 실·국·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·국·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⑤ (생략)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행정국 행정운영과장 서동경